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21. 12. 9 (목)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안경위

- 제안자 : 마포구청장
- 제안일 : 2021. 11. 16.
- 회부일 : 2021. 11. 17. (의안번호 : 21-101)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지방자치법」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연대 서명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연령 하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근거 조항 변경 (안 제1조, 제2조)
- 감사청구 연서 주민연령 하한 완화 (안 제2조)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항

5. 검토보고

○ 본 개정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지방자치법」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연대 서명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연령 하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마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조 사항에 “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로 하고 제2조 사항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을 “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으로, “19세 이상” 을 “18세 이상” 으로 변경하는 내용임.

6. 검토의견

○ 2022. 1. 13.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21조¹⁾에서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1)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법에 따라 연대 서명 연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21. 12. 9 (목)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안경위

- 제안자 : 마포구청장
- 제안일 : 2021. 11. 16.
- 회부일 : 2021. 11. 17. (의안번호 : 21-105)

2. 개정이유

-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고,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수 확대(안 제2조)
- 민간위원 자격 ‘법관’ 을 ‘판사·검사·변호사’ 로 정비(안 제2조)

4.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9조

5. 검토보고

- 본 개정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고,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명의 위원은 법관”을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로, “자 중”을 “사람 중”으로 변경하는 내용임.

6.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제9조1)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며,
- 특히 민간위원 자격요건의 구체화는 법관의 모호한 사전적 의미를 해소하여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됨.

1)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0. 12. 22.>

- 앞으로도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으로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여 공직자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사료됨.